

대구광역시달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6. 9.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원종진 의원 등 5명(원종진, 조복희, 김기열, 안영란, 배용식)
- 발의일자: 2021. 5. 25.
- 회부일자: 2021. 5. 28.
- 상정 및 의결: 제280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2021. 6. 9.)

2. 개정이유

- ‘착한가격업소’를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로 정의하고,
- 착한가격업소 이용자 보상금의 지급방법을 규정하되, 현금 외에도 도서상품권 · 문화상품권 ·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하고자 함.
- 또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 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착한가격업소’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로 정의(안 제2조)
- 착한가격업소 이용자 보상금의 지급방법 규정(안 제7조)
- 물가모니터요원의 채용 주체를 구청장으로 규정(안 제9조)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공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11조 신설)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 「대구광역시달서구 기간제 근로자 규정」
 -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
 - 「대구광역시달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2021. 5. 26. ~ 2021. 6. 7.) 결과: 의견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전문위원 김경숙)

-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구청장이 개인서비스 업소 중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를 실질적으로 지원·관리하는 방안을 규정한 것으로 대구시장과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착한가격 업소를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조례안 제2조의 개정내용은 적절하며,
- 조례안 제7조의 착한가격업소 이용자 보상 조항은 보상금 지급방법을 추가하여 주민이 알게 쉽게 규정하였음.
- 안 제9조제1항에서는 물가모니터요원 채용주체를 구청장으로 명시하고, 제2항은 법령표기방법 오류를 수정하여 조례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 안 제11조는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관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해당부서에서 조례안 제7조제1항의 보상금 지급에 대한 예산적 범위를 명시한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용어 추가 의견이 있었고,
 - 신설 조례안 제7조제2항의 보상금 지급의 구체적인 방법은 조례로 규정하기보다는 ‘보상금의 지급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 이 별도로 정한다’는 수정의견이 있었으며,
 - 조례안 제11조 포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대구광역시 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이 가능하므로 조례 규정 신설의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음.

6. 질의 및 답변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토론 요지

- 조례안 제7조 착한가격업소 이용자 보상에 대해서 제1항에 보상금 지급에 대한 예산의 범위를 명시하고, 제2항에 보상금의 구체적 지급 방법은 조례로 규정하기 보다 시행규칙 등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집행부 의견에 동의함.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수정내용: 불임 수정안과 같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7조제1항 중 “소정”을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 개정안 | 수정안 |
|--|--|
| 제7조(착한가격업소 이용자 보상)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고 이용 후기 등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u>소정</u> 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현금 또 는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지역 화폐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착한가격업소 이용자 보상) ① ----- ----- -----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 -----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방 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